

『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토록 장려하여 지역 농업인의 물류비 절감과 소득보전 및 도매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중 일부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지원 관련 신설(안 제65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,

「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」 제7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구미시 거주 농업인에게 출하한 물품의 위탁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,
-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출하인은 '21년 기준 약 5,100명이며 이 중 구미시 출하인은 2,950명(약 58%)정도임. 출하자가 각종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여 법인에게 매매를 위탁하면서 발행하는 수수료는 출하금액의 7%이며 이 중 2%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지역 농민의 물류비 절감과 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출하자 신청에 의한 지원이므로 보다 많은 출하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